

의안번호	2214708
의 퇴 인	민홍철의원
회 답 일	2026.1.29.
추계번호	25D6508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배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11억 1,800만원(단년도 소요)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금 지급	21,118

주: 본 추계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금 지급규정을 토대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유족 결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4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8조(배상금)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의료지원금)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생활지원금)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3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국가등은 관련자 및 유족에게 거창·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	미대상: 제정안 부칙에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임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안 제4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	—	
3	안 제8조(배상금)	○	
4	안 제9조 (의료지원금)	×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거창사건과 관련된 상이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한 상이자에 대한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희생자 유족회에서도 상이자를 10명 이내의 소수로 추정만 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현재 거의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이자 인원이나 상이 당시 장애등급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상이자에 대한 지원금은 추계가 곤란
5	안 제10조 (생활지원금)	×	제정안은 위원회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부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성금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
6	안 제23조 (공동체 회복 지원 등)	—	미대상: 제정안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거창·산청·함양사건등의 관련자 및 유족의 수는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망자 및 유족의 수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배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현재 등록된 유족 외에도 추가적인 관련자나 유족의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신청인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된 인원을 배상금 지급인원으로 산정¹⁾
- 제정안에 따른 배상금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배상금과 위자료로 함
 - 안 제8조에서는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의 종류는 유족배상금, 장례비, 물건 멸실·훼손에 따른 수리비·휴업배상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있는데 장례여부 및 물건 멸실·훼손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례비 및 물건에 대한 수리비·휴업배상비는 추계에서 제외함
- 「국가배상법」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사망자 및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²⁾, 제정안 시행 이후 유족 신청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사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만 추계의 대상으로 함
 - 기존 위원회는 1998년 당시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국가배상법 위자료 지급 대상인 피해자 가족등의 생존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1) 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구 분	금 액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배우자,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제정안 제18조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보상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진행될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에 따른 차감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7년에 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27년에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수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거창·산청·함양사건의 관련자 수는 기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망자 및 유족의 수로 가정함
- 기존 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6년 7월 4일까지 유족 등록 신청을 접수 받은 3,572건(사망자 956건, 유족 2,616건) 중 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을 관련자로 심의·의결한 바 있음

[표 2] 거창·산청·함양사건 사망자 및 유족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사망자			유 족		
	신청접수	인 정	불인정	신청접수	인 정	불인정
계	956	934	22	2,616	1,517	1,099
거 창	557	548	9	963	785	178
산청·함양	399	386	13	1,653	732	921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과 성과」, 2012. 12.

나. 유족배상금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제8조에 따른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제8조에 따르면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위원회의 산정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배상금 산정

구분	사망당시 배상금(A)	최종 배상금(B)
유족배상	$A = \text{사망자 생존 시 취업가능 연도의 월 평균임금}^{1)} \times \text{취업가능기간(호프만 계수)}^{2)} \times (1 - \text{생활비 공제율}^{3)})$	$B = A \times [1 + (76\text{년} \times 5\%^{4})]$ ※ 76년 = 배상금 지급연도(2027년) - 사망연도(1951년)

주: 1) 고용노동부에서는 1971년(월 19,501원) 이후의 평균임금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음. 따라서 거창 사건등이 발생한 1951년부터 1970년까지의 평균임금을 추정함에 있어,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 평균 물가상승률(12%)을 적용하여 역산하고, 통계청에도 자료가 없는 1966년 이전의 경우 연 평균 10%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해서 역산하여 추정함

2) 만20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까지를 취업가능기간으로 가정하고, 만23세 미만 남자의 경우 군복 무기간인 3년을 제외함

3)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생활비 공제율은 35%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30%임. 다만, 사망자의 부양가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나 사망 당시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고 가정함

4)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밝혀진 사망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934명임

[표 4] 거창·산청·함양사건 사망자

(단위: 명)

구분	소계	0세~ 10세미만	10세~ 20세미만	20세~ 30세미만	30세~ 40세미만	40세~ 50세미만	50세~ 60세미만	60세~ 70세미만	70세~ 80세미만	80세~ 90세미만	90세 이상
거창	548	191	93	43	48	71	50	40	9	2	1
산청	292 ¹⁾	88	56	36	30	37	19	11	8	1	0
함양	94	18	13	19	10	19	13	2	0	0	0
합계	934	297	162	98	88	127	82	53	17	3	1

주) 연령미상자 6명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들에 대하여 [표 3]의 산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유족배상금³⁾은 다음의 표와 같이 41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유족배상금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유족배상금		
	사망당시 배상금	이자	합계
거 창	519	1,972	2,491
산 청	271	1,030	1,301
합 양	72	274	346
합 계	862	3,276	4,138

주: 연령미상자에 대한 배상금은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위자료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유족의 생존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만 추계

-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한 사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169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위자료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	금액	위자료
거 창	548	16 ¹⁾ 또는 20	9,940
산 청	292	16 또는 20	5,240
합 양	94	16 또는 20	1,800
합 계			16,980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를 감액함(「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11억 1,800만원(단년도 소요)으로 추계

3) “거창사건등 명예회복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이라도 제정안 제11조에 따라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 추계에서는 사망자 전원에 대해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년
유족배상금	4,138
위자료	16,980
합계	21,118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금 지급규정을 토대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유족 결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